##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72

발의연월일: 2025. 2. 3.

발 의 자: 박준태·박충권·서명옥

인요한 • 이양수 • 최수진

김용태 • 구자근 • 고동진

장동혁 • 신동욱 • 유상범

강선영 · 김소희 · 곽규택

김장겸 · 김선교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음.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직접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 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 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수사처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사건은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관받아 공소유지를 한다.
- 제3조(수사 중인 사건 및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 및 이 법에 따른 수사처의 사무는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이관한다.
- 제4조(조직폐지에 따른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사처에 소속된(파견의 경우를 포함한다) 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 관과 그 밖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각 고등검찰청·각 지방검찰청 또 는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수

사처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를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로 한다.

②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을 "감사원은"으로 한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를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을 "검사가"로 한다.

제37조 단서를 삭제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으 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를 "판사에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청 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를 "지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으로 한다.

(7)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을 "국 세청장"으로 한다.

⑧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3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286조 전단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를 "판사에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청 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으로 한다.

제77조 중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를 "판사에

게 하여야"로 한다.

⑩ 미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①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을 "검사는"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을 "검사는"으로 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감사원"으로 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 수사처"를 "검찰"로 한다. 제84조 중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감사원"으로 한다.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단서를 삭제한다.

(b)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를 "판사에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청,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를 "지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으로 한다.

⑪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다만, 수 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다만"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을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을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 장"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